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10. 0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도록 해당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 자연경관영향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하천정비 등을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소하천구역 및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중, 이·치수 등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등은 자연경관영향협의 완화

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하천구역에서의 소하천등 정비를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2)

나.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중, 하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의 5,000 제곱미터 이상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이나,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천의 경계가 명확

하지 않아 이를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의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양안 제방 안쪽 및 제방 등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 확대(안 별표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00.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사) 중 “개발사업”을 “개발사업(「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2) (마) 3) 중 “하천의 경계”를 “하천구역의 경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경관영향협의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영향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table border="1"><tr><td>(가) ~ (바) 생략</td></tr><tr><td>(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u>개발사업</u></td></tr></table>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 (라) 생략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1) ~ 2) 생략 3)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	(가) ~ (바) 생략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u>개발사업</u>	[별표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 ----- ----- ----- -----.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table border="1"><tr><td>(가) ~ (바) 현행과 같음</td></tr><tr><td>(사) -----</td></tr><tr><td>----- <u>개발사업(「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는 제외한다)</u></td></tr></table> (2) ----- ----- (가) ~ (라) ----- (마) ----- ----- ----- 1) ~ 2) ----- 3)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u>개발사업(「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는 제외한다)</u>
(가) ~ (바) 생략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u>개발사업</u>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u>개발사업(「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는 제외한다)</u>						

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 하천의 양안(兩岸) 중 당해 <u>하천의 경계</u>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 ----- <u>하천구역의 경계</u> ----- -----
(3) 시행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	(3)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224